



제422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령금융소비자 거래지연조치 등 도입〉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18호)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00호)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76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1.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	5
2.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거래지연조치 도입 등	12
3. 제3자에 대한 통보제도 도입	25
4.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 통보에 대한 민사상·행정상 면책	30
5. 고령금융소비자 금융피해 보고 및 금융감독원 조사 권한 부여	32
6. 기타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35

I . 제안경위

1. 김정호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5인

나. 제 안 일 : 2024. 10. 30.

다. 회 부 일 : 2024. 10. 31.

2. 김용만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용만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1. 6.

다. 회 부 일 : 2024. 11. 7.

3. 강훈식의원안

가. 제 안 자 : 강훈식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12. 24.

다. 회 부 일 : 2024. 12. 26.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정호의원안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으나,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금융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히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등).

2. 김용만의원안

현행법에서는 고령자의 금융피해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해지고 있음. 미국은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방법과 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적·적극적으로 계좌 거래를 지연시키는 조치와 거래 요청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에게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과 직원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3. 강훈식의원안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704억원, 3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60세 이상인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지연조치를 하며, 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3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

□ 3건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함)」 개정안은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지연조치, 제3자 통보제도, 금융위원회 보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아울러, 이러한 거래지연조치 또는 제3자 통보제도에 대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과실에 대한 민사·행정상 면책을 규정하거나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고령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제도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¹⁾를 넘어서면서,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²⁾로 진입하였음.

○ 국제연합 기준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에 처음 진입한 것은 2000년이었으며, 이후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하였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

1) 1,024만 4,550명, 2024. 12. 23. 기준

2) 국제연합(UN)은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음.

에 진입하였음.

-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36년에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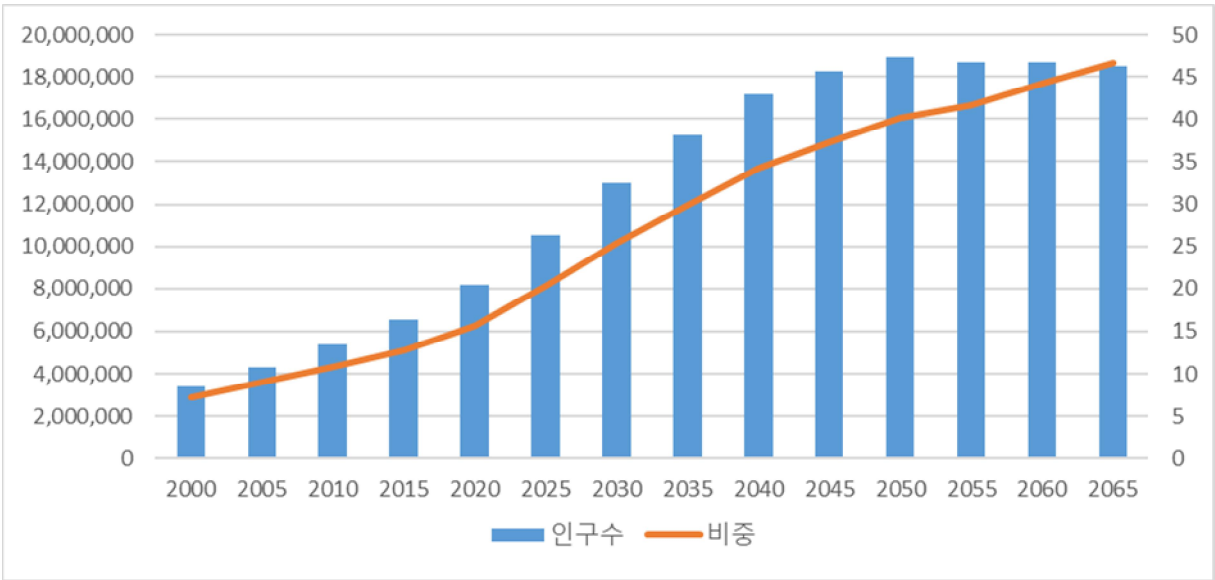
[표 1]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및 비중

(단위: 명)

구 분	2008. 3.	2011. 5.	2013. 7.	2015. 8.	2017. 8.	2019. 5.
전 체	49,324,670	50,613,213	51,064,841	51,465,228	51,753,820	51,840,339
65세 이상	4,940,573	5,573,537	6,143,986	6,702,212	7,257,288	7,804,999
	10.02%	11.01%	12.03%	13.02%	14.02%	15.06%
구 분	2020. 7.	2021. 10.	2022. 12.	2024. 1.	2024. 12.	
전 체	51,839,852	51,662,290	51,439,038	51,313,912	51,221,286	
65세 이상	8,323,396	8,792,644	9,267,290	9,775,810	10,244,550	
	16.06%	17.02%	18.02%	19.05%	20.00%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 2024. 12. 24)

[그림 1]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및 비중



(자료: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 2024. 9. 26. 재구성)

□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층에 대한 경제적 학대 또는 고령층의 금융피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023년 노인학대 건수는 10,638건으로 이 중 경제적 학대는 352건에 불과하지만, 학대자에 대한 의존·신뢰관계³⁾ 및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낮은 신고율을 고려하면 실제로 발생하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착취)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⁴⁾⁵⁾.

[표 2] 유형별 노인학대건수(2020~2023)

(단위: 건, %)

구분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계
2020	3,917	4,188	231	431	760	223	53	9,803
2021	4,390	4,627	260	406	691	204	46	10,624
2022	4,431	4,561	259	397	689	169	36	10,542
2023	4,541	4,531	265	352	758	165	26	10,638

(자료: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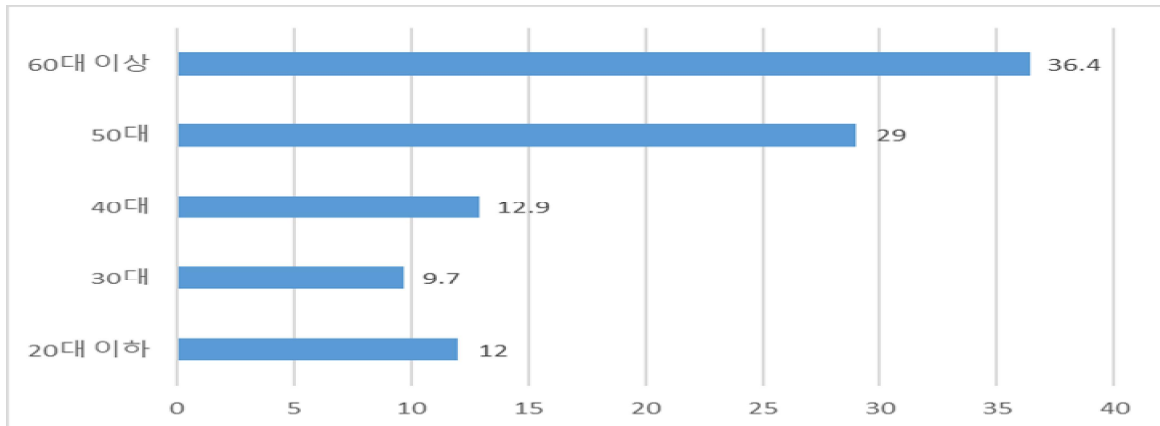
○ 2023년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3) 2023년 경제적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자녀 등 친족에 의한 경우가 78.4%임.

4) 이현주, 노인은 왜 경제적 학대의 대상이 되는가, KCGAT 2021. 3. <오피니언 제7호>

5) 「2018 -2019 고령 소비자 보호에 관한 보고서」(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피해 고령자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고 믿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호시설에 보낼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그림 2]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



□ 금융위원회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신종 금융사기,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등 금융피해가 점증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와 금융착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⁶⁾.

○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업무중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를 발견하는 경우 거래처리 지연·거절 및 관계당국 등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기관의 금융착취 적발·감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고령자는 인지능력의 저하,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젊은층에 비해 금융착취나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높고, 고령층의 금융손실은 본인의 삶의 질 악화뿐만 아니라 향후

6) 당시 금융위원회는 고령층 금융착취 방지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노인 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필요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

가족 및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부양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이에 반해 현행 법체계 측면에서 보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반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고령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⁷⁾⁸⁾.

□ 이에 개정안은 고령의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제3자 통보제도 등을 신설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고령자 피해 방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민사·행정상의 면책권, 금융위원회 보고 제도, 직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 앞서 살펴본 고령 사회로의 변화 추세, 고령자에 대한 금융착취 또는 금융사기 피해 현황과 해외 입법 사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미국은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하여 연방법과 주법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이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의심 시 해당 관계기관에 신고·통보할 수 있고, 제3자 통지 및 거래·지급

7)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 2022. 5. 6.

8) 국회도서관,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2024. 8. 13.

의 연기조치를 할 수 있는 등 고령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음⁹⁾.

- 영국의 경우 「돌봄법」을 제정하여 지방당국에 경제적 학대를 포함한 고령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제적 학대에 대한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¹⁰⁾하고 있음¹¹⁾.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할 것인지 또는 「노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지연 조치 근거 마련, 제3자 통지 조치 도입, 금융회사 등의 면책 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체계적 대응절차 및 직원교육 등의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방식이 적절한 측면이 있음¹²⁾.

- 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거래상대방으로, 가족·지인 등 제3자에 의

9) 국회도서관,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2024. 8. 13.

10) 생활여건의 변화, 사유불명의 계좌 인출, 금융서류에 대한 사유불명의 상실, 유언장 및 금융서류의 갑작스러운 변경, 인터넷사기, 우편사기, 방문범죄 등

11) 김나영, “주요국의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방지노력”(자본시장 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2023. 4. 3.

12) 금융위원회도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발표(2020. 8.) 당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한 금융착취에 관해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명의 변경 등 법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별도의 법률(가칭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¹³⁾도 있음.

- 참고로,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필요 시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4)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임.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고령층의 사기피해 방지 강화 등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의 관계에서 금융소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사인 간 거래에 관한 사항은 동법의 규율 범위에서 벗어나고, ② 사기 등 범죄행위 관련 사항은 개별 법령에서 규율 중으로 법령 간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별로 검토함.

13)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 2022. 5. 6.

2.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거래지연조치 도입 등

□ 개정안은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금융회사가 거래지연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32조의2 또는 제43조의2 신설).

현 행	김정호의원안	김용만의의원안	강훈식의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 용 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제2조(정의) ----- ----- ----- ---. 1. ~ 10.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 ---.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고령금융소비자”란 65세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 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1. “고령금융소비자”란 60세 이상인 일반금융소비를 말한다.
<신 설>	제1절의2 금융판매업자등의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의2 금융회사의 고령자 보호	
제3절 손해배상책임 등			제3절 거래지연조치 및 손해배상책임 등
<신 설>	제32조의2(거래지연조치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가	제32조의2(거래지연조치) ① 금융회사는 65세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이	제43조의2(거래지연조치)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고령자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이하 “거래지연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3. 제3자가 후견인 또는 대리인 등

하 이 절에서 “고령자”라 한다)가 요청한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고령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고령자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이하 “거래지연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요청한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고령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고령자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이하 “거래지연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령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유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거래지연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감독원에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고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연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3. 제3자가 후견인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유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거래지연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령자와 금융감독원에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고령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연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

3. 제3자가 후견인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령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유용하려는 행위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령자와 금융감독원에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고령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

	<u>업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통지·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u>	<u>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통지·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u>	<u>업자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통지·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u>
--	---	---	---

(1) 거래지연조치 제도 도입

□ 세 건의 개정안은 모두 고령금융소비자¹⁴⁾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또는 금융회사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고령자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인 거래지연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거래지연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공통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① 유사수신행위¹⁵⁾, ② 전기통신금융사기¹⁶⁾, ③ 제3자가 후견인 또는 대리인

14) 개정안에 따라 고령금융소비자 또는 고령자로 지칭하고 있으나, 아래에서는 고령금융소비자로 용어를 통일하여 검토함.

1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등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령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함.

- 이러한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거래지연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임.

○ 거래지연조치의 주체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금융회사이고, 거래지연조치를 하는 경우 당사자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며, 거래지연조치 이후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즉시 해제하도록 함.

- 김정호의원안의 경우 거래지연조치를 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음.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填)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개정안의 거래지연조치와 유사한 제도는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환급법”이라 함)」의 ‘이용자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¹⁷⁾가 있음.

○ 임시조치 제도는 금융회사가 자체점검 결과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다는 정보를 받거나 추정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의미함.

- 임시조치 제도는 개정안과 유사하게 임시조치 이후 본인확인 조치를 통해 해당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임시조치제도와 유사한 거래지연조치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도입하면서 조치 사유에 전기통신금융사기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또는 제3자에 의한 금융착취 등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

17)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제3자 금융착취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에서도 금융기관이 업무중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를 발견하는 경우 거래처리 지연·거절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¹⁸⁾

○ 다만, 거래지연조치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규율 범위, 금융회사등의 이행 가능성, 「통신사기환급법」상 임시조치와의 중복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전제로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판매규제를 규율하는 것인데, 개정안과 같이 동 법률의 규율 범위를 제3자와 소비자 간 거래로 확대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은행연합회는 고령자 금융사기·착취 등은 금융상품 계약체결이 아닌 계좌이체 등 자산 이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8) 다만,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이행부담 감안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연구용역, 시범사업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추진한 결과 현재는 현행 체계 하에서 자율서비스 중심 피해예방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한 단계적 접근방안을 검토중이며 개정안 반영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 반영시, 수범자의 법 적용·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타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사기피해환급법」¹⁹⁾, 「노인복지법」)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 둘째, 요청받은 해당 금융거래가 유사수신행위 또는 제3자 금융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요청 받은 금융거래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²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②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는지 여부, ③ 장래에 원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3자에 의한 금융착취의 경우에도 요청받은 금융거래에 대해 후견인 또는 대리인 등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해당 고령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유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19)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경우 이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규제(임시조치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2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자금의 전액 또는 그 초과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 예금·적금·부금·예탁금, 사채(社債) 매입대금, 회비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함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보이스포싱(전기통신금융사기) 외의 사기 또는 금융착취와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판단오류 등에 의한 거래지연조치로 인해 금융거래의 신속성이 저해되고 선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다만, 개정안²¹⁾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거래지연조치를 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을 함께 도입하고 있는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거래지연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권 부여를 통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통신사기환급법」에 따라 이와 유사한 임시조치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거래지연조치가 도입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통신사기환급법에 따른 임시조치와 개정안에 따른 거래지연조치가 모두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조치 기간, 해제를 위한 확인 대상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1) 김정호의원안, 김용만의원안

[표 3] 통신사기환급법상 임시조치와 개정안의 거래지연조치 비교

구분	임시조치 (통신사기환급법)	거래지연조치 (개정안)
조치 기간	제한 없음	15일 이내
확인절차	본인확인절차	금융거래목적 확인
통보 대상	당사자	당사자 및 금융감독원

(2) 고령금융소비자 정의

□ 세 건의 개정안은 거래지연조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고령금융소비자 또는 고령자²²⁾가 될 수 있는 연령과 요건을 각각 정의하려는 것임.

[표 4] 정의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령 금융 소비자 정의	· (김정호의원안) ① 65세 이상 일반금융소비자 중 ②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금융거래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안 §2 11.
	· (김용만의원안) 65세 이상 일반금융소비자	안 §32의2①
	· (강훈식의원안) 60세 이상 일반금융소비자	안 §2 11.
금융피해 정의	· (김정호의원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기망, 공갈, 강요, 위력, 개인정보의 부정 취득·사용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입는 재산상의 피해	안 §2 12.

□ 고령금융소비자와 관련하여 김정호의원안과 김용만의원안은 각각 65세 이상, 강훈식의원안은 60세 이상 일반금융소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정호의원안은 연령뿐만 아니라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22) 김정호의원안, 강훈식의원안은 고령금융소비자로, 김용만의원안은 고령자로 각각 지칭하고 있으나, 아래에서는 고령금융소비자로 통일하여 검토함.

금융거래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자'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고령금융소비자의 범위를 가장 좁게 정의하고 있음.

-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65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령자(노인)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정책 목적에 따라 법률별·조문별로 연령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연령 외에 질병 유무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입법례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4] 고령자(노인) 기준 현황

법률	기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u>65세 이상</u>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u>60세 이상</u> 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정의) 1. “노인등”이란 <u>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u> 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고령자고용법	제2조(정의)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u>55세 이상</u> 인 사람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u>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u> 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참고로, 현재 각 업권별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과 각 금융기관의 고령금융소비자보호내부준칙은 원칙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를 65세 이상으로 하되, 필요시 금융거래 경험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토대로 금융상품별로 범위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5] 주요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지침상 고령금융소비자 정의

업권	명칭	고령금융소비자 정의
은행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	• 고령 금융소비자 : 65세 이상 (필요시 금융거래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토대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보험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보험업)	
여전	고령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저축은행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신탁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요령	
금투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	• 고령투자자 : 65세 이상 • 초고령투자자 : 80세 이상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령투자자, 초고령투자자 연령을 보다 낮게 정의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김정호의원안은 연령 기준 외에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금융거래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을 고령금융소비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요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적용기준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고령자 외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 관한 정의조항만 신설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나아가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는 거래지연조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제약²³⁾ 등 고령금융소비자의 개념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생명보험협회, 신탁중앙회 등 이해관계자는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일반적인 노인 기준연령을 적용하여 65세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23) 김정호의원안 정의 조항 참조

3. 제3자에 대한 통보제도 도입

□ 개정안은 고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거래지연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제출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등에게 해당 요청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김정호·김용만안 제32조의3 또는 강훈식의원안 제43조의3 신설 등).

현 행	김정호의원안	김용만의원안	강훈식의원안
<신 설>	제23조의2(고령금융소비자의 대리인 지정) 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착취 의심거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지를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령금융소비자의 직계존·비속 2. 금융상품의 공동소유자 3. 금융상품의 수익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고령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3(제3자에 대한 통보) ① 고령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자신의 금융거래의 목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명단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미	제32조의3(제3자에 대한 통보) ① 고령자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금융거래의 목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명단을 금융회사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의3(대리인에 대한 통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처리 전에 제23조의2에 따른

	<u>리 제출할 수 있다.</u> <u>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해당 금융거래 요청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통보대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1. 제1항에 따른 명단에 기재된 자</u> <u>2. 계좌의 공동소유자</u> <u>3.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u>	<u>② 금융회사는 고령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해당 금융거래 요청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통보대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1. 제1항에 따른 명단에 기재된 자</u> <u>2. 계좌의 공동소유자</u> <u>3.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u>	<u>대리인에게 해당 금융거래 요청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리인이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로 판단되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u>
--	---	--	---

- 구체적으로 보면, 고령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목적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명단을 미리 제출하거나(김정호·김용만의원안) 금융착취 의심거래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강훈식의원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명단을 제출받은 제3자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고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거래지연조치 대상²⁴⁾이 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전에 통보할 수 있음.
 - 김정호·김용만의원안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강훈식의원안은 대리인의 대상을 직계존비속, 금융상품 공동소유자 및 수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표 6] 제3자 통보제도 비교

구분	김정호·김용만의원안	강훈식의원안
통보대상자	· 미리 제출한 명단에 기재된 자 · 계좌의 공동소유자 ·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 직계존·비속 · 금융상품 공동소유자 또는 수익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위에 해당하는 자를 사전에 대리인으로 지정할 필요
통보 사유 및 방식	· 고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거래지연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 처리전 통보 가능	
통보 예외	· 통보대상자가 거래지연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4)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제3자 금융착취 등

□ 이상의 제도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에 도입된 ‘제3자 통지 허용 조항’²⁵⁾을 일부 차용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임.

○ 미국 버지니아주는 2024년에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제3자 통지 허용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고령자는 ‘믿을 수 있는 제3자 명단’을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금융착취의 표적 또는 피해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명단에 기재된 자, 계좌의 공동소유자 또는 수익자,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중 한 명 이상에게 금융착취 위험을 통지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제3자 또는 대리인 통보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경우 인지능력이 부족한 일부 고령금융소비자가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 피해를 입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인지하도록 하여 고령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따라서는 고령금융소비자의 범위가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 전체²⁶⁾로 규정될 수 있고, 이러한 고령금융소비자 중에서는 다른 금융소비자와 동일하게 인지능

25) 이하의 내용은 국회도서관,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2024.8.13.를 참조하였음.

26) 단, 김정호의원안의 경우 해당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서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금융거래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음.

력 등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의 판단에 따라 금융거래 요청 내용이 제3자에게 통보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김정호·김용만의원안의 경우 고령금융소비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거래지연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대리인의 위임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이를 금융거래 업무에 대한 위임으로 볼 경우 금융거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요청)한 자에 대하여 그 금융거래 요청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되어 제3자 통보의 실익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사전에 명단 또는 대리인을 제출하더라도 금융거래 요청 시점에 해당 명단이 유효한지 검증이 어렵고, 제3자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경우 피해 예방 기능이 사실상 없을 수 있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이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4.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 통보에 대한 민사상·행정상 면책

-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거래지연조치 또는 제3자 통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김정호·김용만의원안 제32조의4).

현 행	김정호의원안	김용만의원안
<신 설>	제32조의4(민사상 면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2조의4(민사·행정상 면책) 금융회사(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금융회사(임직원 포함)가 안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 또는 안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통보를 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을 경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려는 것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지연조치 또는 제3자 통보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금융회사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요청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에 해당한다고 ‘의심’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가 지연되는 등 민사상·행정상의 책임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금융회사가 이러한 민사상·행정상의 책임을 경과실인 경우 면제받도록 하여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거래지연조치 또는 제3자 통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검토한 거래지연조치 또는 제3자 통보 제도 등의 도입 여부에 따라 미국의 관련 입법례, 관련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뉴저지주는 2020년 「금융착취보호조치법」을 제정하여, 투자자문업자 등이 요청된 거래·지급이 고령자 금융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거래·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민사상·행정상 면책 규정을 두었음.²⁷⁾
- 금융위원회는 거래지연조치 또는 제3자 통보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도입을 전제할 경우 면책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7) 이상의 내용은 국회도서관,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2024.8.13.를 참조하였음.

5. 고령금융소비자 금융피해 보고 및 금융감독원 조사 권한 부여

□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에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강훈식의원안 제48조의2).

현 행	강훈식의원안
<신 설>	제48조의2(고령금융소비자 금융피해 보고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에 금융착취(고령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또는 무단으로 취득·사용하거나 후견인 지위 등 법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그 재산을 통제·유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에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보고한 조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

	<u>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⑥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	--

□ 개정안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착취를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등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법례²⁸⁾는 다음과 같음.

○ 미국의 연방법인 「고령자안전법(Senior Safe Act)」 제3423조는 관련 교육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고령자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선의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해당 사례를 공개한 경우, 민사상·행정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함.²⁹⁾

28) 최창수, 「미국의 고령자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입법례와 시사점」, 『은행법연구』 제12권 제2호, 2020. 11.

29) §3423. Immunity from suit for disclosure of financial exploitation of senior citizens

(a) Immunity

(2) Immunity from suit

(A) Immunity for individuals

An individual who has received the training described in subsection (b) shall not be liable, including in any civi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 for disclosing the suspected exploitation of a senior citizen to a covered agency if the individual, at the time of the disclosure—

(i) served as a supervisor or in a compliance or legal function (including as a Bank Secrecy Act officer) for, or, in the case of a registered representative, investment adviser representative, or insurance producer, was affiliated or associated with, a covered financial institution; and

(ii) made the disclosure—

(I) in good faith; and

(II) with reasonable care.

- 이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고령자 금융착취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려는 취지임.
- 다만, 이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 및 그 직원에게 교육을 받을 의무나 신고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 개정안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착취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피해예방 및 금융착취 행위자에 대한 엄벌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착취 여부를 실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 금융착취 의심 시 금융위원회 신고 및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착취 의심 시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사가 기관의 성격과 업무범위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 사항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기타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① 매년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김정호의원안 제32조의5),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며(김용만의원안 제29조제3항), ③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회사가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김용만의원안 제32조의5, 강훈식의원안 제16조제3항).

현 행	김정호의원안
<신 설>	제32조의5(고령금융소비자 보호시책 마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고령금융소비자 대상의 금융피해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금융소비자 대상의 금융피해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현 행	김용만의원안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①·② (생략) <신 설>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현 행	김용만의원안	강훈식의원안
제16조(금융 상 품 판 매 업 자 등 의 관 리 책 임) ① . ② (생 략) <신 설>	제32조의5(직원의 교육 등) ① <u>금융회사는 고령자의 금융거 래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u> ② <u>금융회사는 직원에게 고 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대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 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③ <u>금융위원회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하여 금융 회사의 대응절차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한 다.</u>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u>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 령금융소비자를 금융착취로부 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 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 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절차 및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하여야 한다.</u>

□ 먼저, 금융위원회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
시하도록 하고, 이를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
용하도록 하는 등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
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고령금융소비자가 향후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 다만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의 내용 및 재정적·행정적 효율성 고려 시 각종 사기범죄 등으로 인한 고령금융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관련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³⁰⁾를 통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기함.

- 아울러 일반적인 실태조사는 2~3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의견, 노인 관련 실태조사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입법례³¹⁾ 등을 함께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30)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대상에는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의 경제상태**” 조사항목으로서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자산과 부채, 가구지출과 개인지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노인의 경제활동**” 조사항목으로서 ‘경제활동 참여실태, 최장기 종사 직종, 향후 경제활동 의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및 욕구’를 조사하고 있음.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3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결과의 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음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금융회사가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고,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앞서 검토한 거래지연조치 또는 제3자 통보 등의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관련 업무 지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래지연조치 또는 제3자 통보 등의 제도 도입 여부를 함께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임직원의 직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³²⁾,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및 ②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³⁾.

3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②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내부통제기준)

(제1호~제7호 생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별표2]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략)

8.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문 의 처
02)6788-5108